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7. 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7. 7. 2) 상정·수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김 광 우)

가. 개정이유

- 종로구 세입징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운용상 문제점의 개선·보완을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 경우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2조)
-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차 체납과 2년차 이상 체납과의 격차가 커서 2년차 이상 체납의 경우를 차등화 하여 2년차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함(안 제3조)
- 부칙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소급적용을 두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단서규정을 둠(부칙 제1항).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김 충 식)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質疑 및 答辯 要旨 (생 략)

5. 討 論 要 旨

○ 김성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

6. 修 正 案 의 要 旨

○ 수정이유

- 안 부칙 제1항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에 소급적용을 둔 것을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정산 후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불이익을 주게 되며, 또한 제2항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과도 상충되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안 본문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함.

제1항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7.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